

1. 개정이유

공무상 장애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애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평가기준 개선(안 제11조, 별표1, 별표2)

척추장애 및 외모의 결손 등에 대한 장애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체계화 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

나. 장애부위 및 장애계열 명확화(안 제8조, 별표3)

2개 이상 장애가 있어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부위 및 장애계열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계조문 정비(안 제9조)

현행 시행령 제40조제2항이 제40조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15.~2021. 11. 24.)

총리령 제 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장애 인정 기준)”을 “(장애 판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애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애부위”라 한다) 및 장애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애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애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③ 장애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애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애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머리·얼굴·목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추와 그 밖에 체간골(體幹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④ 장애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⑤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조정은 장애계열이 다른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애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애·조절기능장애·운동장애 또는 시야장애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애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애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

⑥ 장애계열이 다른 장애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3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1. 장애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애의 조합에 대하여 장애등급기준에 하나의 장애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애로서 장애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

호·제6호 및 제2급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나.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애로서 장애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다.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애로서 장애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

제7호·제8호, 제2급제6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라.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애로서 장애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제8호 및 제7급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마.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애로서 장애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바.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애로서 장애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제1

2호, 제12급제4호 및 제13급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2. 하나의 장애가 장애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애 중 둘 이상의 장애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애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애등급을 그 공무원등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애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제9조 중 “영 제40조제2항”을 “영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에 따른 비장애인의 운동가능 범위를”을 “비장애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등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오그라들,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공무원등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등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 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마목1)가) 및 같은 목 1)나) 중 “복시가”를 각각 “겹보임이”로 하고, 제2호나목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나목1) 중 “심낭”을 “심장막”으로 하며, 제6호다목5)가) 중 ““반흔”(癍痕)이라”를 ““흉터”라”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눈꺼풀의 장애

- 1) 영 별표 3에서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이란 누워서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넓이의 2분의 1 이상이 노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 영 별표 3에서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이란 누워서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넓이의 2분의 1 미만이 노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1) 및 2)에서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은 플루레신 검사 등으로 염증이 계속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이 경우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인정되지 않으면 외모의 흉터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4) 영 별표 3에서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보통으로 눈을 떴을 경우 눈동자를 완전히 덮어 버리거나 눈을 감았을 경우 눈동자를 완전하게 덮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귓바퀴의 장애

- 1) 영 별표 3에서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이란 귓바퀴의 3분의 2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 2) 영 별표 3에서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이란 귓바퀴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 3) 영 별표 3에서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이란 귓바퀴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4. 코의 장애

가. 외부 코의 장애

- 1) 외부 코는 비골(鼻骨)·비연골(鼻軟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을 말한다.
- 2) 영 별표 3에서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이란 외부 코의 3분의 2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3에서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란 외부 코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3에서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이란 외부 코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나. 코의 기능장해

1) 영 별표 3에서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이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코안 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3에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7. 척주 등의 장해

가. 척주의 운동단위

척주의 운동단위는 목뼈부, 등뼈부 및 허리뼈부로 구분한다. 이 경우 각각의 운동단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뼈부는 목뼈 제1번부터 목뼈 제7번까지의 척추체 및 후두과(後頭顆: 뒤통수 관절융기)와 목뼈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목뼈 제7번과 등뼈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2) 등뼈부는 등뼈 제1번부터 등뼈 제12번까지의 척추체 및 등뼈 제1번과 등뼈 제2번 사이의 분절부터 등뼈 제11번과 등뼈 제12

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3) 허리뼈부는 허리뼈 제1번부터 제1번 엉치뼈까지의 척추체 및 등뼈 제12번과 허리뼈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허리뼈 제5번과 엉치뼈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나. 척주의 기능장해

1)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2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3)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70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

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목뼈 제1번과 목뼈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가) 해당 척추분절이 어긋난 정도를 펴거나 굽힌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 그 차이가 목뼈는 3.5밀리미터, 등뼈는 2.5밀리미터, 허리뼈는 4.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나) 허리뼈의 경우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과 아래쪽 척추체의 윗면이 이루는 각도를 펴거나 굽힌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의 측정 각도를 합산한 값이 제1허리뼈와 제2허리뼈 사이의 분절, 제2허리뼈와 제3허리뼈 사이의 분절 및 제3허리뼈와 제4허리뼈 사이의 분절은 각각 15도 이상인 경우, 제4허리뼈와 제5허리뼈 사이의 분절은 20도 이상인 경우, 제5허리뼈와 제1엉치뼈 사이의 분절은 25도 이상인 경우

(다) 목뼈의 경우 안정상태에서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과 아래쪽 척추체의 아랫면이 이루는 각도가 해당 척추분절의 위쪽이나 아래쪽 척추분절의 각도보다 11도 이상 큰 경우

7)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의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또는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을 한 사람을 말한다.

8) 영 별표 3에서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공인된 관혈적 수술(현미경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을 포함한다)을 한 사람을 말한다.

9) 영 별표 3에서 “척주의 수상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에 비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을 말한다.

다. 척주의 변형장해

1) 척주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의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 2)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
- 3)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4)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5)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
- 6)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7)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 영치뼈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

체외 골절은 횡돌기(橫突起: 척추뼈에서 양쪽 옆으로 뻗은 돌기, 가로돌기)나 극돌기(棘突起: 척추뼈고리 정중면에서 뒤쪽으로 뻗은 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

- 8) 영 별표 3에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

- 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
- 2) 영 별표 3에서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목뼈부는 목뼈 제5번부터 목뼈 제8번까지, 허리뼈부는 허리뼈 제4번 및 허리뼈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영 별표 3에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

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3에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3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마.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

1) 영 별표 3에서 “빗장뼈(쇄골)·복장뼈(흉골)·갈비뼈(늑골)·어깨뼈(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이란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상실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갈비뼈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 등에 관계없이 갈비뼈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인정한다. 늑연골의 경우도 같다.

바. 준용등급 결정

1)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척추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

3)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4)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운동단위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운동단위별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운동단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6) 미골의 골절은 척추의 변형장애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골절에 따른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7) 그 밖의 체간골 중 두 개 이상의 뼈에 각각 뚜렷한 변형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1 제8호나목3) 중 “위팔뼈”를 “위팔뼈(상완골)”로, “노뼈 및 자뼈”를 “노뼈(요골) 및 자뼈(척골)”로 하며, 같은 목 12) 본문 중 “기형”을 “변형”으로, “부정유합(不整癒合) 상태”를 “상태”로 하고, 제9호나목3) 중 “넓적다리뼈가”를 “넓적다리뼈(대퇴골)가”로, “정강이뼈와 종아리뼈”를 “정강이뼈(경골)와 종아리뼈(비골)”로 하며, 같은 목 5) 중 “발목발바닥뼈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로, “발목뼈{발꿈치뼈·목말뼈·발배뼈[주상골(舟狀骨)]와 3개의 췌기뼈[설상골(楔狀骨)]로 형성되어 있다}”를 “발목뼈(족근골)[발꿈치뼈(종골)·목말뼈(거골)·발배뼈(주상골), 입방뼈(입방골)와 3개의 췌기뼈(설상골)로 형성되어 있다]”로 하고, 제9호나목14) 본문 중 “기형”을 “변형”으로 하고, “부정유합된 것”을 “잘못 붙은 상태”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흉터의 장애(머리·얼굴·목 등)

가. 흉터의 측정

1) 영 별표 3에서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肥厚)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線像癍痕), 면상반흔(面像癍痕) 및 조직함몰(組織陷沒)이 남은 것을 말한다.

2) “선상반흔”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흉터를, “면

상반흔”이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흉터를, “조직함몰”이란 연조직(soft tissue) 또는 뼈조직이 상실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한다.

3) 선상반흔의 길이는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의 넓이는 흉터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부위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하여 가로 방향의 길이와 그에 수직하는 세로 방향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에 따른 봉합사(縫合絲)의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

4) 2개 이상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하나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그 길이 또는 면적을 합산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5) 하나의 흉터에 선상반흔과 면상반흔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선상반흔에 해당하는 장애등급과 면상반흔(선상반흔을 포함하되, 선상반흔의 폭을 1센티미터로 하여 넓이를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6) 하나의 흉터에 면상반흔과 조직함몰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조직함몰에 해당하는 장애등급과 면상반흔(조직함몰 부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7) 외모 중 머리·얼굴 및 목 등의 각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다. 이 경우 흉터가 머리·얼굴 및 목 중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 1을 얼굴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거나, 얼굴에 있는 흉터의 2배를 머리 또는 목의 흉터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

나. 외모의 흉터

- 1) 영 별표 3에서 “외모”란 머리·얼굴(눈꺼풀·뺨바퀴·코를 포함한다) 및 목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머리와 얼굴의 경계는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는 가장 윗부분으로 한다.
- 2) 영 별표 3에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또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영 별표 3에서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머리 또는 목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4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 4) 영 별표 3에서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8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머리 또는 목

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 5) 영 별표 3에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머리 또는 목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남은 사람을 말한다.
- 6) 외모의 흉터 중 선상반흔·면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눈썹이나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지거나 흉터가 턱 밑 등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7) 머리뼈 일부가 상실된 경우에는 6)에도 불구하고 그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머리뼈의 성형수술 후에 판정한다.

다. 노출된 면의 흉터

- 1) 영 별표 3에서 “노출된 면”이란 팔의 경우에는 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 이하, 다리의 경우에는 발등을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를 말한다.
- 2) 영 별표 3에서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9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 3) 영 별표 3에서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3에서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5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3에서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2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라. 조정등급 결정

제8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흉터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각각의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 1) 외모의 흉터장애와 노출된 면의 흉터장애
- 2) 외모의 흉터장애와 노출된 면 외의 부위(두 팔의 위팔부, 두 다리의 넓적다리, 흉복부, 등 및 엉덩이 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흉터장애
- 3) 팔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애와 다리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애
- 4) 외상·화상 등으로 말미암은 안구상실에 따른 눈 주위와 얼굴의 조직함몰·흉터 등이 생긴 경우에는 안구상실에 해당하는 장애와 흉터 등의 흉터장애
- 5) 노출된 면의 흉터장애와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의 흉터장애

6) 눈꺼풀·췌담낭 또는 코의 상실장애와 외모, 노출된 면 또는 노출된 면 외의 부위의 흉터장애. 이 경우 장애등급을 조정한 결과 제7급 이상에 해당하면 제7급으로 결정한다.

마. 준용등급 결정

- 1) 얼굴에 신경마비로 다른 부위의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그 기능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얼굴의 신경마비가 있고 그에 따른 다른 부위의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제13급을 인정한다.
- 2) 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신체 표면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면 제12급을,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면 제13급을,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면 제14급을 인정한다.
- 3) 전체 신체 표면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제9급을 인정한다. 다만, 라목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면 장애등급이 제9급보다 높은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결정한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 4) 피부면에 비후 또는 함몰은 없으나 정상적인 피부색깔에 비하여 색소가 눈에 띄게 짙어지거나 옅어지는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넓이가 얼굴, 목,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면에 각각 중등도의 흉터에 해당하는 면상반흔의 넓이보다 넓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별표 2의 제목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를 “비장애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으로 한다.

별표 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절명		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 (각도)
척주	목뼈부(경추부)	후두과(後頭顆: 뒤통수 관절용기)-목뼈1번 분절	13	
		목뼈1번-목뼈2번 분절	10	
		목뼈2번-목뼈3번 분절	8	
		목뼈3번-목뼈4번 분절	13	
		목뼈4번-목뼈5번 분절	12	
		목뼈5번-목뼈6번 분절	17	
		목뼈6번-목뼈7번 분절	16	
		목뼈7번-등뼈1번 분절	6	
		등뼈부(흉추부)	등뼈1번-등뼈2번 분절	4
	등뼈2번-등뼈3번 분절		4	
	등뼈3번-등뼈4번 분절		4	
	등뼈4번-등뼈5번 분절		4	
	등뼈5번-등뼈6번 분절		4	
	등뼈6번-등뼈7번 분절		5	
	등뼈7번-등뼈8번 분절		6	
	등뼈8번-등뼈9번 분절		6	
	등뼈9번-등뼈10번 분절		6	
	등뼈10번-등뼈11번 분절		9	
	등뼈11번-등뼈12번 분절		12	
	허리뼈부(요추부)	등뼈12번-허리뼈1번 분절	12	
		허리뼈1번-허리뼈2번 분절	12	
		허리뼈2번-허리뼈3번 분절	14	
		허리뼈3번-허리뼈4번 분절	15	
		허리뼈4번-허리뼈5번 분절	17	
		허리뼈5번-엉치뼈1번 분절	20	
어깨관절		앞위쪽올리기	150	

	옆위쪽올리기		150	
	뒤쪽올리기		40	
	모으기		30	
	안쪽 돌리기		40	
	바깥쪽 돌리기		90	
팔꿈치관절	펴기		0	
	굽히기		150	
	안쪽 돌리기		80	
	바깥쪽 돌리기		80	
손목관절	손등쪽 굽히기		60	
	손바닥쪽 굽히기		70	
	손목의 요골(橈骨: 노뼈)쪽 굽히기(요사위)		20	
	손목의 척골(尺骨: 자뼈)쪽 굽히기(척사위)		30	
손허리손가락관절 (중수지관절)	엄지손가락	펴기	0	
		굽히기	60	
	둘째 손가락	펴기	0	
		굽히기	90	
	가운데손가락	펴기	0	
	굽히기	90		
넷째 손가락	펴기	0		
	굽히기	90		
	새끼손가락	펴기	0	
	굽히기	90		
	손가락관절	엄지손가락	펴기	0
	굽히기	80		
제1손가락관절(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	둘째 손가락	펴기	0	
		굽히기	100	
	가운데손가락	펴기	0	
		굽히기	100	
	넷째 손가락	펴기	0	
	굽히기	100		
새끼손가락	펴기	0		
	굽히기	100		
	제2손가락관절(끝쪽 손가락뼈마디관절)	둘째 손가락	펴기	0
			굽히기	70
		가운데손가락	펴기	0
		굽히기	70	
넷째 손가락	펴기	0		
	굽히기	7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해등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9조, 제11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새끼손가락	펴기 굽히기	0 70
엉덩관절	펴기 굽히기 모으기 벌리기(외전) 안쪽 돌리기 바깥쪽 돌리기		30 100 20 40 40 50
무릎관절	펴기 굽히기		0 150
발목관절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바깥쪽 뒤집기 안쪽 뒤집기		20 40 20 30
발허리발가락관절 (중족지관절)	엄지발가락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50 30
	둘째 발가락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40 30
	가운데발가락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30 20
	넷째 발가락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20 10
	새끼발가락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10 10
발가락관절	엄지발가락	펴기 굽히기	0 30
제1발가락관절(몸쪽 발가락뼈마디관절)	둘째 발가락	펴기 굽히기	0 40
	가운데발가락	펴기 굽히기	0 40
	넷째 발가락	펴기 굽히기	0 40
	새끼발가락	펴기 굽히기	0 40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장애계열표(제8조제4항 관련)

부위		기질장애	기능장애	계열 번호
눈	안구(양쪽)		시력장애	1
			운동장애	2
			조절기능장애	3
			시야장애	4
	눈꺼풀(좌 또는 우)	상실장애	운동장애	5
귀	속귀 등(양쪽)		청력장애	6
	귓바퀴(좌 또는 우)	상실장애		7
코	코안		비호흡(鼻呼吸) 및 후각기능장애	8
	외부 코	상실장애		9
입			씹는 기능장애 및 말하는 기능장애	10
		치아장애		11
머리, 얼굴, 목		흉터장애		12
신경·정신		신경장애		13
		정신장애		14
흉복부장기 (외부 생식기 포함)		흉복부장기 장애		15
체간	척주	변형장애	기능장애	16
	그 밖의 체간골	변형장애[쇄골(빗장뼈), 흉골(목장뼈), 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		17
팔	팔(좌 또는 우)	상실장애	기능장애	18
		변형장애(위팔뼈 또는 아래팔뼈)		19
		흉터장애		20
	손가락(좌 또는 우)	상실장애	기능장애	21

다리	다리(좌 또는 우)	상실장애	기능장애	22
		변형장애[대퇴골(넙다리뼈) 또는 하퇴골(정강이뼈·종아리뼈)]		23
		단축(짧아짐)장애		24
		흉터장애		25
	발가락(좌 또는 우)	상실장애	기능장애	26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장애 인정 기준) ① (생략) <u><신 설></u>	제8조(장애 판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애부위”라 한다) 및 장애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애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애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③ 장애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애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애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6. 머리 · 얼굴 · 목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u><신 설></u>	

<신 설>

<신 설>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추와 그 밖에 체간골(體幹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④ 장애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⑤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조정은 장애계열이 다른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애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애 · 조절기능장애 · 운동장애 또는 시야장애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애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애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 또는 기

<신 설>

능장애가 남은 경우

⑥ 장애계열이 다른 장애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3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1. 장애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애의 조합에 대하여 장애등급기준에 하나의 장애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애로서 장애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제6호 및 제2급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나.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애로서 장애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다.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애로서 장애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6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라.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애로서 장애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제8호 및 제7급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마.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애로서 장애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바.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애로서 장애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제12호, 제12급제4호 및 제13급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2. 하나의 장애가 장애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애 중 둘 이상의 장애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애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u>장애등급을 그 공무원등의 장애등급으로 한다.</u> 3. <u>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u> <u>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u> <u>이 경우의 장애등급의 결정에</u> <u>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u> <u>한다.</u>
② (생 략) 제9조(장애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u>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u> <u>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u> <u>은 별표 1에 따른다.</u> 제11조(관절의 운동기능장애 측 정) ① (생 략) ② <u>관절의 운동기능장애의 정도</u> <u>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u> <u>2의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u> <u>준각도에 따른 비장애인의 운동</u> <u>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u> <u>다.</u> <신 설>	⑦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장애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u>영 제40조제1항-----</u> <u>-----.</u> 제11조(관절의 운동기능장애 측 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비장애인의 신체 각 관절</u> <u>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u> <u>-----</u> <u>--.</u> ③ <u>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등</u> <u>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u> <u>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u> <u>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u> 1. <u>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u> <u>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u>

	<u>한 경우: 공무원등의 능동적</u> <u>운동에 의한 측정방법</u> 2. <u>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u> <u>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등의</u> <u>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u>
--	---